

「업사이클 상용화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공고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한 업사이클 산업의 안정적인 정착과 발전을 제고하고자 「업사이클 상용화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경기도 소재 업사이클 관련 중소기업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4. 8. 5.

경 기 환 경 에 너 지 진 흥 원 장

1

사업개요

- 사 업 명 : 업사이클 상용화 지원사업
- 접수기간 : 2024. 8. 5.(월) ~ 8. 16.(금) 15:00까지
- 지원대상 : 경기도 소재(본사 또는 공장) 업사이클 관련 중소기업

지원분야	지원 항목
상용화 지원	인건비, 운반비, 시제품 제작비, 재료비, 무형자산 취득비, 시험·인증비, 기자재 구입·임차비, 전문가 활용비(자문) 등

- 지원규모 : 2개사 / 기업당 최대 2,800만원 한도 내 지원
- 교부조건

구분	내역 및 주의사항
지원금(현금)	• 상용화 지원에 대해 과제당 지원하는 지원금은 28,000천원 이내로 계상 (총 사업비의 80%이내)
기업부담금(현금)	• 기업부담금은 지원금을 제외한 모든 비용을 의미하며 현금만을 구성 • 기업부담금에 대한 납입 증빙서류는 사업비관리통장 사본으로 함을 원칙으로 함 • 상용화 지원의 기업부담금은 총 사업비의 20%이상으로 계상

○ 신청기간 : 2024. 8. 5.(월) ~ 8. 16.(금) 15:00까지

○ 신청방법 : 이메일 접수(cse1213@ggeea.or.kr)

○ 신청자격

- (지원대상) 경기도 소재 중소기업 ※공고일 기준 업력 1년 이상
- (소재지) '주 소재지', '등록공장', '지점', '분사무소' 중 1가지 이상이 경기도 소재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기업
- (업력) 개인사업자 : 사업지등록증 상 개업일 기준 / 법인사업자 : 회사성립일 기준
- (가점대상) 「2023년 경기도 업사이클플라자 메이커톤」수상자
 - ※ 대상, 최우수상, 우수상, 장려상 수상자 5점 가점
- (지원 제외 대상)

접수 마감일 기준 신청 기업 또는 대표가 다음의 경우 중 하나라도 해당되는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

1. 동일한 과제로 타 중앙정부·지자체·공공기관의 지원 사업을 수행 중인 경우
2. 정부 지원 사업 및 지자체·공공기관(GGEEA 포함) 사업에 참여 제한으로 제재 중인 경우
3. 최근 3년 이내 「근로기준법」에 의거하여 고용노동부 내 임금 등 체불사업주로 공개된 경우
4. 국세 또는 지방세를 체납 중(징수 유예 포함)이거나 이행보증보험증권 발급이 불가능한 경우
5.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5항의 유흥 등 관련 분야의 업종을 영위하고 있거나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
 - * 유흥 등 관련 분야의 범위 : 일반 유흥주점업, 무도 유흥주점업, 기타 주점업, 기타 사행 시설 관리 및 운영업, 무도장 운영업, 블록체인 기반 암호화 자산 매매 및 중개업
6. 부도·파산·회생·화의 또는 휴·폐업 상태인 경우
7. 금융기관을 통한 거래 개설이 불가능하거나 본인 명의의 금융자산에 대한 압류 진행 중인 경우(사표 소멸자 제외)
8. 민사집행법에 의거 채무불이행자 명부에 등재되거나 신용정보 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9. 최근 2년간 연속하여 결산 재무제표 상 부채비율이 1,000% 이상이거나 유동비율이 50% 이하인 경우(부채비율 산출 시 투자 유치에 의한 부채 항목은 예외)
 - * 부채비율 = (부채총계/자기자본)×100, 유동비율 = (유동자산/유동부채)×100
 - * 투자 유치에 의한 부채 항목 : 전환사채(CB), 신주인수권부사채(BW)
10. 최근 결산 기준 완전자본잠식 상태인 경우
11. 접수 마감일까지 참가 신청서, 사업계획서, 증빙 서류 등 제출서류를 미제출한 경우
12. 다음 각 항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기업
 - [공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 [노동]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 [환경] 「폐기물관리법」, 「대기환경보전법」, 「소음진동관리법」, 「물환경보전법」
 - [납세] 「국세기본법」, 「지방세기본법」

○ 제출서류

구 분	세 부 내 용
필수 서류	1. 사업계획서
	2. 참가신청서 및 개인(기업) 정보 수집·이용·제공·조회 동의서
	3. 기업 범위반 사실 확인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및 범위반 사실 부존재 여부 약약서
	4. 사업자등록증 및 공장등록증(경기도 내 공장 소재 경우) 각 1부.
	5. 중소/중견기업 확인서
	6. 법인등기부등본 ※법인기업일 경우 제출
	7. 4대보험·국세·지방세 완납 증명서 ※국민건강보험,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온라인 발급 가능
	8. 사업장 4대보험 가입자 명부
	9. 최근 2년도 재무제표(2022, 2023) 또는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국세청 ‘표준재무제표증명’ 또는 ‘재무제표 확인(회계사·세무사 확인본)’ 원본 제출
	10.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NTIS) 유사과제 검색결과 1부 ※ 검색년도: 2022년 ~ 현재, 유사도: 60% 기준
해당시	11. 기타 기술력 증빙 서류(특허증, 시험인증서 등)

○ 세부일정 및 절차

단 계	단 계 별 세 부 내 용	일 정
신청·접수	◦ 지원사업 기업 모집공고	8. 5.(월) ~ 8. 16.(금) 15:00
↓	↓	↓
신청기업 평가 및 선정	[기업선정 평가] ◦ (1차)서류검토: 제출서류 및 기업 적격성 등 검토 ◦ (2차)발표평가: 사업계획서 기반 발표자료 제출 및 평가 ※ 평가위원회 구성·운영: 외부전문가 포함 5인 내외	(1차) 8. 20.(화) (2차) 8. 22.(목) (선정) 8. 29(목)
↓	↓	↓
협약체결 및 지원금 교부	◦ 추가서류 제출, 사업계획서 보완 및 협약 체결 ◦ 지원금 교부	9월 초
↓	↓	↓
사업관리 및 중간점검	◦ 추진현황, 집행을 등 중간점검 실시 등 사업운영 관리	9~11월
↓	↓	↓
결과보고 및 정산	◦ 수행기업 사업추진 실적 및 정산보고서, 개발 제품 제출 ◦ 경기환경에너지지원 완료보고서 검토 및 최종평가회 개최	12월

※ 세부 일정 및 절차는 사업 운영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개별 안내 예정

○ 지원금액 : 기업별 최대 2,800만원 ※ 부가가치세 미지원 / 기업 자부담 20%이상

○ 제한사항

- (금형제작비) 지원금의 20%를 초과할 수 없음
- (인건비) 학술연구용역 인건비 기준단가를 준용하며, 지원금의 30%를 초과 할 수 없음
- 과제로 기재한 제품·기술 관련 비용만 인정, 타 제품·기술 관련 비용 불인정

○ 사용용도

지원 분야	비목 정의
	증빙 서류
인건비	■ 사업계획서에 과제 참여인력인력으로 명시된 자에 대한 인건비 ※ 총 지원금의 50%를 초과하여 사용할 수 없음 ※ 학술연구용역 인건비 기준단가를 준용하되, 해당 인력 개인 연봉의 100%를 초과할 수 없음(참고 1) ※ 개인별 인건비 신청금액은 급여명세서상 세전급여보다 같거나 적어야 함
	■ 증빙서류 : 급여대장 또는 급여명세서(세전급여, 원천세 및 4대보험, 세후급여 등 표시), 이체내역증(인건비 지급 대상자 개인별 이체내역증), 4대보험 가입확인서, 근로계약서, 근로자 신분증 및 통장사본
시제품 제작비	■ 협약 기간 내 완료되는 시제품의 외주 개발·제작 비용(금형, 워킹모업 등) ※ 총 지원금의 50%를 초과하여 사용할 수 없음 ※ 자체 제작 비용은 지원하지 않음(재료 구입·사용 비용에 한해 재료비 지원) ※ 기존 자체 생산하고 있는 제품과 동종이거나 유사한 시제품은 불인정(제품 생산 비용 집행 불가. 단, 제품 기능 향상 등 고도화 시 동종이거나 유사한 시제품도 인정) ※ 재료비, 기자재 구입·임차비를 별도 계상한 경우, 중복성 검토를 통해 집행 인정여부 결정 가능
	■ 증빙서류 : 계약서(200만 원 이상), 견적서, 비교견적서(100만원 이상), 거래명세서, 지원금 사용내역서(증빙사진, 상세 설명 포함), 설계도면 등
재료비	■ 제품 개발 및 시제품 제작에 소요되는 재료 또는 원료 구입 비용 ※ 구매 또는 생산 원가로 산정, 협약 종료 2주 전까지 사용 인정 ※ 시제품 시험·제작에 필요한 적정량의 재료만 인정하며, 제품 양산을 목적으로 구매한 재료 또는 원료는 불인정(구입량이 적정량을 과도하게 초과할 경우, 제작에 필요한 적정량만 인정)
	■ 증빙서류 : 견적서, 비교견적서(100만원 이상), 거래명세서, 검수조서(증빙사진 포함)

지원 분야	비목 정의		
	증빙 서류		
지식재산권 출원·등록 및 시험분석· 인증비	■ 협약 기간 내 획득 가능한 특허, 상표,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 출원비·수수료·관납료, 시험 분석비, 제품 인증비 등 ※ 정부·지자체 등에 의해 해당 비용을 지원받는 경우 중복 지원 불가 ※ 국내 1건 당 200만 원 이내, 국외 1건 당 800만 원 이내로 산정		
	■ 증빙서류 : 계약서, 견적서, 비교견적서(100만원 이상), 거래명세서, 출원(등록)청구서 및 등록증, 시험분석 결과서·인증서, 관납료 영수증 등		
기자재 구입·임차	■ 사업 목표 및 내용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기계 또는 설비, 공구 구입·임차 비용 ※ 총 지원금의 20%를 초과하여 사용할 수 없음 ※ 범용성 기자재는 구입이 불가능하며 임차만 가능(임차기간은 협약기간 내에 해당하는 기간만 인정)		
	■ 증빙서류 : 견적서, 비교견적서(100만원 이상), 거래명세서, 검수조서(증빙사진 포함), 임차 계약서 등		
전문가 활용비	■ 제품·기술 개발에 있어 기업이 자체적으로 해결하기 힘든 부분에 대해 자문 등 전문가 활용비용 ※ 사전에 신청된 전문가(회사)와 동일한 경우에만 인정 ※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제규정(회의 등 수당 지급규정 별표1)에 따른 단가로 금액을 산정 ※ 관련세법에 따라 원천징수 및 신고납부 필수(참고 2)		
	구분	기본료(2시간)	초과(시간당)
	자문 참석수당	200,000원	100,000원
	■ 증빙서류 : 계약서, 견적서, 거래명세서, 전문가 이력서(경력증명서), 전문가 활용비용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 등 세무신고내역 또는 세금계산서, 결과물(자문 보고서, 자문활동을 통한 산출물 등)		
장소 임차비	■ 과제 수행 시 필요한 창고, 제작공간 등 임대차계약에 의한 장소 임차비 ※ 본 과제를 위해 신규 체결한 임대차계약 건에 대해서만 지급 ※ 사업자등록증을 가지고 있는 사업자(납세의무자)와의 거래만 가능하며, 비사업자와의 거래는 원칙적으로 금지 ※ 임대기간 중 협약기간에 해당하는 기간만 일할계산하여 인정		
	■ 증빙서류 : 임대차계약서, 견적서, 비교견적서(100만원 이상), 거래명세서, 임차물 활용 사진 등 사용증빙		
디자인 개발비	■ 협약 기간 내 완료되는 제품·포장 디자인 개발 비용(CI·BI, 홈페이지, 카탈로그, 광고, 이미지 디자인 등 홍보 관련 디자인 제외)		
	■ 증빙서류 : 계약서(200만 원 이상), 견적서, 비교견적서(100만 원 이상), 거래명세서, 지원금 사용내역서(증빙사진, 상세 설명 포함) 등		
기타	■ 상기 비목 이외 전담기관에서 개발 과정 중 필요성을 인정하는 기타 비용(이행보증보험 발행 비용, 폐기물 처리비용 등)		

○ 선정절차

1. 서류 검토

- 지원 제외 대상 여부 및 제출 서류 구비 여부 검토
- 적격 기업 대상 발표 평가 진행

2. 발표 평가

- 서류 적격 기업을 대상으로 사업계획 발표 및 질의응답 실시
- 평가항목 : 사업계획 체계성 및 실현 가능성(40)
제품·기술의 사업성 및 혁신성(40)
사회 기여도 및 효과성(20)

3. 최종 선정

- 발표 평가 결과, 70점 이상 기업 중 고득점자 순 2개사 선정
※ 세부 사항 및 절차는 사업 운영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개별 안내 예정

○ 협약체결

- 최종 선정된 기업은 사업계획 등 서류 보완, 이행보증보험증권 등 추가 서류 제출 후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이하 진흥원)과 협약 체결
(통보한 기한 내 필요 서류 미제출 또는 허위 작성 시 협약 체결 불가)
- 다음 사항에 해당 시 협약 체결 불가, 해지, 사업비 환수 등 조치 가능

1. 사업비의 목적 외 사용, 사업비 사용실적 허위 보고 등 중대한 협약 위반으로 사업의 계속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사업 수행이 정지 상태가 되어 소기의 성과를 기대하기 곤란하거나 완수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
3. 정당 사유 없이 협약 기간 내 관련 서류 미제출 또는 사업 수행 포기
4. 천재지변, 부도·폐업 등의 불가피한 사유로 사업 계속 수행 불가능
5. 사기, 허위 계약 등 위법·부당 행위가 적발된 경우
6. 참여자의 기업이 협약 기간 중 타인에게 양도된 경우
7. 참여자의 기업이 지원 제외 대상인 사실이 발견된 경우
8. 참여자가 통보받은 기한 내 이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
9. 참여자가 정산금 반납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 사업 참여 유의사항

- 제출 서류는 지정 서식을 이용해야 하며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 평가 과정에는 지원기업 대표가 직접 참여하여야 하고, 불참 시 선정 대상에서 제외(사전협의 시 임직원이 대신 발표 가능)
- 지원금은 9~12월 중 2회에 걸쳐 분할 교부 예정으로, 지원금 교부 전 협약 기간 내 부득이하게 지출해야하는 경우, 발주기관과 협의를 통해 지출 원인행위 소급 인정
- 사업기간 중 사업 진도관리 및 보조금의 적정 사용 여부 등 점검을 위하여 서류 및 현장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며, 점검 결과에 따라 시정 또는 보완 요구, 사업비 환수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음
- 선정된 과제에 대해서는 점검(지원금 정산 포함)을 실시하여 지원 목적 외 다른 용도로 보조금을 사용하거나 부정하게 집행한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금액 환수
- 심사 결과와 관련된 평가사항은 비공개 원칙이며, 심사 결과에 대한 이의 신청은 통보일로부터 5일 이내 최대 1회에 한함
-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동 사업 운영 지침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지침.기준 등 미숙지로 발생하는 불이익 및 그에 따른 책임은 동 사업 참여자에게 있음
- 사업 참여자는 사업 진행 과정 및 결과물에 대해 지식재산 기본법, 폐기물관리법 등 법적 사항을 준수해야 하며, 미준수로 인한 책임은 전적으로 동 사업 참여자에게 있음

《 부정·부당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편취하는 경우 》

참여자가 아래 각 호와 같이 위법·부당행위로 지원금을 수령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본 사업 운영 지침 및 관련 법규에 의거하여 조치될 수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 해당사항

- 1) 사업비를 유용·횡령하는 등 사업 외 목적으로 부정하게 사용한 경우
- 2) 과제 최종 실적 및 정산보고서, 중간보고서, 기타 주관기관 요청서류를 정당한 사유 없이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로 작성한 경우
- 3) 사업 수행 관련 자료 및 결과물에 대해 위·변조, 표절 등 부정행위를 저지른 경우
- 4) 외부 압력, 허위 자료, 청탁 등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선정되어 협약이 해약된 경우
- 5) 주관기관이 통보한 정산금을 기한 내 미납하거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과제를 수행한 경우
- 6) 그 밖에 협약 위반 행위 또는 주관기관 측 사업 운영 지침 및 관련 법규에 위배되는 행위를 저지른 경우

○ 조치사항

- 1) 해당사항 각 호의 행위가 범죄행위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 수사 기관 수사 의뢰, 형사 고발 등 조치가 가능하며, 「형법」 등 관련 법규에 의하여 참여자에게 변상책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음
- 2) 해당사항 각 호의 행위가 범죄행위에는 속하지 않으나 부정·부당 편취에 해당하는 경우 본 사업 운영 지침에 따라 해당 지원금을 환수할 수 있음
- 3) 위 조치사항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거나 기타 관련 법규에 따른 부정행위 적발 시 부당수취액의 금액, 횡수, 수법 등을 고려하여 본 사업 운영 지침에 따라 향후 지원사업 참여를 최대 영구 배제할 수 있으며, 그 사실을 유관기관에 통보할 수 있음

구분	내용
사업 관련 문의처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업사이클플라자팀 담당자 E. cse1213@ggeea.or.kr T. 031-299-7928
공고 확인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 https://www.ggeea.or.kr/notice (알림마당 - 공지사항) •경기도업사이클플라자 : https://www.ggupcycle.or.kr/frt/main.do (소식 - 공지사항)
접수처	이메일 접수(cse1213@ggeea.or.kr)

- 【붙임】 1. 사업계획서 양식 1부.
2. 개인(기업) 정보 수집·이용·제공·조회 동의서 양식 1부. 끝.